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29

제안연월일 : 2024년 4월 30일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15조제1항은 실명을 명시해야 하는 문서 및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못해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주관부서 공무원은”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주관부서 공무원의”로 수정함(안 제15조제1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주관부서 공무원은”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주관부서 공무원의”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5조(정책연구용역의 실명제)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과장,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담당 장학사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정책연구용역의 실명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 (개정안과 같음)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생 략)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7조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생 략)	제18조(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9조(정책연구용역 성과 점검 사후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개정안과 같음)
제18조 (생 략)	제20조(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0조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정책연구용역의 실명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과장,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담당 장학사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사후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정책연구용역의 실명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과장,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담당 장학사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생 략)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생 략)	제18조(현행 제17조와 같음)
〈신 설〉	제19조(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사후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생 략)	제20조(현행 제18조와 같음)